파견인력관리시스템 예상질의답변

- Q1.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"공동인증서"를 발급받아서 파견인 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?
- '공동인증서'가 없이는 신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. <u>'공동인증서'는 인터넷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버 신분 증</u>으로 안전한 포탈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'공동인증서'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<u>일반인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은 '개인용인증</u>서' 또는 '범용개인인증서'를 활용 가능합니다.
 - Q2. 처음이 아닌 재신청자의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파견인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?
- <u>재신청자의 경우에도</u> '참고1'의 파견지원자용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'공동인증서' 발급 및 등록 등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파견 신청서를 작 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Q3. 4.1일 이전, 이메일을 통하여 파견인력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- 본 시스템은 '21.4.1.(목)일부터 신청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따라서 '21.4.1.(목) 이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은다시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 - 다만, <u>희망지역, 근무기간, 근무형태 등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</u> 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신규 파견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또한, <u>파견근무를 하시고 재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시스템을</u> 통하여 파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- Q4. 과거 근무기관이 많은 경우 어떤 기관을 입력해야 하나요? 또는 과거 근무기관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- 과거 근무기관은 <u>가장 최근 근무기관부터 3개소까지 입력</u>하시면 되고, 과거 근무기관이 없는 경우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
 - Q5. 근무기관 배정통보 문자메시지 수신 이후 3시간내에 답변을 해야 하나요?
- 근무기관 배정통보 문자메세지는 <u>긴급히 의료인력이 필요한 기관의</u> <u>요청사항 접수 이후 신청인의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배정 후 그</u>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 - 따라서 신청인에게 결정까지의 시간이 짧을 수 있으나, <u>코로나19</u> <u>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항임을 양해</u>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또한 <u>문자메세지 수신 이후 시스템 접속이 어려운 경우</u> 안내된 <u>유</u> 선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 - Q6. 근무하게 될 기관의 자세한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- '수락' 또는 '거부'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의 <u>'근무정보'의 '보기' 버</u> <u>튼을 클릭하시면 근무하실 기관의 자세한 근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</u>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- <u>추가적인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파견기관 담당자 연락처</u>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Q7. 신청 후 근무기관 배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?

○ <u>기본적인 근무기관 배정의 원칙은 신청서 제출 순서(선착순)</u>대로 이루어지며, 그 외 <u>희망근무지역, 근무기관종류(병원, 생치센 등), 임</u> <u>상경력(숙련도) 등을 비교</u>하여 근무기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.

Q8. 파견 근무 시 파견수당 등은 어떻게 지급 받나요?

- 파견인력의 근무수당은 <u>①직종별 차등 없이 지급하는 '공통수당'</u>과 ②직종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'개별수당'이 있습니다.
 - 공통수당은 <u>위험수당과 교육수당,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출장비</u>가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⑦ (위험수당) <u>'실제 근무일수에 비례'</u>하여 1일차에 15만원, 2일차 부터는 5만원을 지급
 - (· (교육수당) 교육이수자*에 한하여 1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
 - *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 이수 필요
 - ① (초과근무수당) 1시간 당 1만원(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)을 지급
 - ② (출장비) 서울시 11만원, 광역시 10만원, 그 외 지역 9만원 지급
 - 직종별 <u>개별수당은 아래의 수당지급 단가등을 확인</u>하시기 바라며, 수당지급과 관련된 <u>자세한 문의사항 및 행정처리는 각 파견기관의</u> 관할 **시·도로**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인 건 비 내 역			
의사	 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35만원 -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경우는 총 파견일수 × 65만원 ● 위험 수당 = 15만원 + (실제 근무일수 -1) × 5만원 * 1일째 15만원,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● 전문의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10만원)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원) 			
간호사	 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20만원 ● 위험 수당 = 15만원 + (실제 근무일수 -1) × 5만원 * 1일째 15만원,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			
간호조무사	 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10만원 ● 위험 수당 = 15만원 + (실제 근무일수 -1) × 5만원 * 1일째 15만원,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			
임상병리사	 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18만원 ● 위험 수당 = 15만원 + (실제 근무일수 -1) × 5만원 * 1일째 15만원,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			
방사선사	 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21만원 ● 위험 수당 = 15만원 + (실제 근무일수 -1) × 5만원 * 1일째 15만원,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			
요양보호사	 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8만원 ● 위험 수당 = 15만원 + (실제 근무일수 -1) × 5만원 * 1일째 15만원,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 			
간병인	 ● 근무 수당 = 총 파견일수 × 6만원 ● 위험 수당 = 15만원 + (실제 근무일수 -1) × 5만원 * 1일째 15만원,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● 전문직 수당 = 실제 근무일수 × (5만원) -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 			

Q9.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?

- <u>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</u>는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자세한 <u>문의사항 및 행정처리는 각 파견기관의 관할 시·</u> 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* 단,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는 1일이라도 근무 시 적용 <사회보험료율>

구 분	근로자부담금	사업자부담금	비고
국민연금	4.5%	4.5%	
건강보험료	3.335%	3.335%	
장기요양보험료	건강보험료의 10.25%	건강보험료의 10.25%	
고용보험료	0.8%(근로자 실업급여)	0.8%(사용자 실업급여) 0.85%(사용자 고용안 정)	근로자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됨.
산재보험료	_	1.03% (직종에 따라 차등 부과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)	